

● 제289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19. 9. 3.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979

I. 조례안 개요

1. 제안경위

-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 가. 공휴일, 야간시간 대 아픈 유기동물과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급한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위해 24시간 운영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함.
- 나. 위급한 유기동물의 치료를 위해서는 고난이도의 전문성이 확보된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주요 위탁내용
 - 위탁기간 : 2020.4.1.~2022.12.31.(2년 9개월)

- 위탁업무
 -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이송·치료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이송·치료
 -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 기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
- 소요예산 : 450,000천원(2020년 예산)
- 선정방법 : 공개모집(신규)

나.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 필요성
 - 2018년 9월 소방관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의 변경으로 유기동물 구조·출동 거절이 가능해 집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24시간 운영되며 아픈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
 - ※ '18년 3월 유기견 구조 중 3명의 아산소방관이 사망한 사건발생
(서울시 소방관 동물 구조·출동 : '17년 1일 평균 53건)
 - ※ 동물보호센터의 출동은 평시간대 위주로 운영되며, 20개 자치구가 경기도 양주시 보호소와 계약되어 있는 등 신속한 이송치료가 어려운 상황임.

- 서울시는 전국 대비 높은 유기동물 안락사율을 보이고 있고, 동물보호센터는 치료비용 부담, 진료수준 등의 다양한 이유로 유기동물의 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는 상황임에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

※ 유기동물 안락사율('17년 기준) : 서울시 25.8% > 전국 20.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29조, 제38조의2,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3조, 제45조 및 제47조에서 같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실·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 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 서울특별시동물보호조례 제14조(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설치·운영)

-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응급치료 등을 위해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위급한 상태의 동물의 이송·치료
 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의 이송·치료
 3.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4.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나. 예산조치 : 2020년 예산편성(민간위탁금 450,000천원)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동의안의 제출 사유

- 2018년 9월 소방관의 생활안전 출동기준의 변경으로 유기동물 구조·출동 거절이 가능해 집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24시간 운영되며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수행할 기관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유기동물과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위급한 유기동물의 이송·치료를 위해 24시간 운영될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한 안임.

2 민간위탁 사무 추진내역

가. 민간위탁 사무 위탁 내역

- 동의안 대상 사무는 신규사무로서 그간의 민간위탁 실적이 존재하지 않음. 시장은 민간위탁을 통해 : 서울시에서 발생한 유기·유실동물을 대상으로 하여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동물 이송과 치료,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동물 이송·치료,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복지지원센터의 동물의료 상담 및 교육, 기타 동물보호 및 복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시 집행부는 이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서 연간 4억5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하는 경우 첫째는 시설비의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닌 예상이며 이는 2020년 예산심의의

결과에 따름.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년	4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07,000, 사업비 118,000, 시설비 125,000
2021년	4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50,000, 사업비 150,000, 운영비 50,000
2022년	4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50,000, 사업비 150,000, 운영비 50,000
2023년	45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50,000, 사업비 150,000, 운영비 50,000

- 집행부는 동 사무를 시범사업(보조금)으로 수행한바 있으며 사업 실적은 다음과 같음.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14조
- 추진방법 : 공모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추진
- 운영사업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 주요내용
- 야간시간 등 동물보호센터가 출동하지 못하는 사각상황의 아픈 동물 이송·치료
- 중증 등 동물보호센터가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유기동물 이송·치료
- ※ 7월까지 관악구와 용산구만 이송까지 추진하였으나, 8월부터 서울전역으로 확대
- 예 산 : **300백만원**(사비 100%)

추진실적

-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기관 지정 세미나('19. 3. 28)
- 참석자 : 총 150명(시민건강국장, 대한수의사회장, 아주대 이국종 교수 등)
- 유기동물 응급구조·치료('19. 3. 28~7월) : 총 66건 치료
- 의료·상담 : 152건(평일 : 48건, 야간 및 공휴일 : 104건)
- 이송·치료 : 66건(평일 : 47건, 야간 및 공휴일 : 19건)

나.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 서울시는 동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하고 있는데 이는 유기동물의 구조, 보호 및 치료와 관련하여 소방관 출동의 거부사유 존재, 동물의 치료·보호에 있어 전문성의 필요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은 유기동물의 치료에 있어 전문성을 지닌 기관(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보조금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부가 현재 수행중인 유기동물 보호센터의 수의직 공무원과 센터의 시설과 장비에 따른 치료한계가 존재하며 시범사업 중 3개월 동안 의료와 상담은 153건, 이송 및 치료는 66건이 나타나는 등 유기동물 보호의 실적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평일에는 2개구에 대하여서만 대응하고, 주말에는 25개구 전체에 대응한 실적임.
- 민간위탁사무는 이에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24시간)하고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이송·치료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대상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위급한 상태의 유기동물, 각종 사고, 재난 등 위급한 상태에 있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¹⁾는

1)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민간위탁 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동 사무는 동물의 치료 및 수의과적 상담이라는 사무의 수행방식 안에서 수의사라는 전문직업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된다 할 것임.

-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현재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 중 동물에 대한 치료비용을 보조금사업자인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을 본다면 시비의 지출을 줄이는 경제적 효율성이 일부 담보되고 있다고 할 것임.

3 종합의견

- 2018년 3월 30일 발생한 소방관의 유기동물 구조 중 참변으로 인해 소방관이 단순유기동물 구조를 위해 출동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유기동물 구조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자원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단순 유기동물구조에 있어 소방청의 역할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소방청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구조된 유기동물의 경우 고난이도의 수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직영하고 있는 동물복지센터에서 해당 역할을 하기에 어려운 상황임. 이에 따라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가진 기관이 동물복지 및 보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동의안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각호에 따른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판단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동물복지지원센터와 수탁기관간의 업무연계와 업무분장 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유기동물에 대한 치료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예산 및 정책차원의 효율성에 대하여 집행부서의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것임.